

130 (第18回-第4次)

<p>밀도 5개 지구, 기타 9개 지구)에 1,275만 m<sup>2</sup>를 아파트지구로 지정하였으며 10개 지구는 이미 기존의 건설교통부 훈령에 의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는바, 서울시가 동 업무의 시급성을 충분히 감안하였더라면 나머지 4개 지구도 건교부 기준에 의하여 이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을 것이며, 더욱이 동 조례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지난 '99.4.30 개정되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제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은 동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없음</p> <p>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소위원회 구성 안함.</p> <p>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</p> <p>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606</td> <td style="width: 80%;">2000년 7월 일 도시관리위원회</td> </tr> </table> <p>1. 심사경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6월 8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</li> <li>○ 회부일자 : 2000년 6월 10일 회부</li> <li>○ 상정일자 :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(2000년 7월 3일 상정 의결)</li> </ul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주택국장 양갑)</p> <p>가.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율 및 변상금 연체료율을 주택재개발구역내의 공유지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여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</li> <li>-주택재개발구역내 공유지 대부료 및 변상</li> </ul> <p>금 연체료율 인하('99.8.5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)</p> <p>나. 주요골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지 대부료율 및 변상금 연체료율을 주택재개발구역내 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율 및 변상금 연체료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함.(안 제35조)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대부료율 :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25/1000 → 15/1000</li> <li>-변상금 연체료율 : 연 15퍼센트 → 연 10퍼센트</li> </ul> </li> </ul> <p>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양재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제35조(재산의 대부)에 의하면 시장이 양여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, 대부금의 납부시기 및 계약 등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료율은 1000분의 25, 연체료율 연 15퍼센트로 책정되어 있음.</li> <li>○ 그런데 '99.8.5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대부료율 및 변상금 연체료율은 각각 1000분의 15, 연 10퍼센트로 인하되었으나,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인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금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으로서</li> <li>○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에 따른 대부료율 및 연체료율도 주택재개발사업의 그것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조정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</li> <li>○ 다만, 본 조항은 조례입법의 체계상 주택재개발사업 지구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규정하는 것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됨.</li> </ul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없음</p> <p>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소위원회 구성 안함.</p> <p>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</p> <p>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	의안 번호	606	2000년 7월 일 도시관리위원회
의안 번호	606	2000년 7월 일 도시관리위원회	